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도록 명시하고,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보다 실효성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또한, 법 적용 배제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함으로써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차시설 및 체육 시설”을 “주차시설”로 한다.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하며,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 ① 법 제25조제1항제4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 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신·구조문대비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하며,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 ----- ----- 주차시설----- ----- ----- ----- -----.
제33조(법 적용대상 결정 등) <신설>	제33조(법 적용대상 결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4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

① (생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제2항----- ----- -----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법 적용대상자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제3항----- ----- -----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제32조 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비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713